

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4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5. 2. 정영환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5. 9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5. 22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최두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마을회관은 주민 간 교류와 화합,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, 일부 시설에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이에 마을회관의 개축, 대수선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마을회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사업의 신청 및 사업의 감독의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5) 제한사항 및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26호
 - 예고기간: 2025. 5. 2.(금) ~ 2025. 5. 8.(목)[6일간]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지원대상(안 제3조)
 -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, 재난 또는 사고로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음.
 - 지원조건(안 제4조)
 - 마을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고, 대상 부지가 마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음.
 - 시설물의 관리(안 제5조)
 -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,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음.
 - 사업의 신청 및 감독(안 제6조~제7조)
 -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,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음
 - 제한사항(안 제8조)
 -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, 건물을 양도·교환·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유지·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, 집행부에서는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